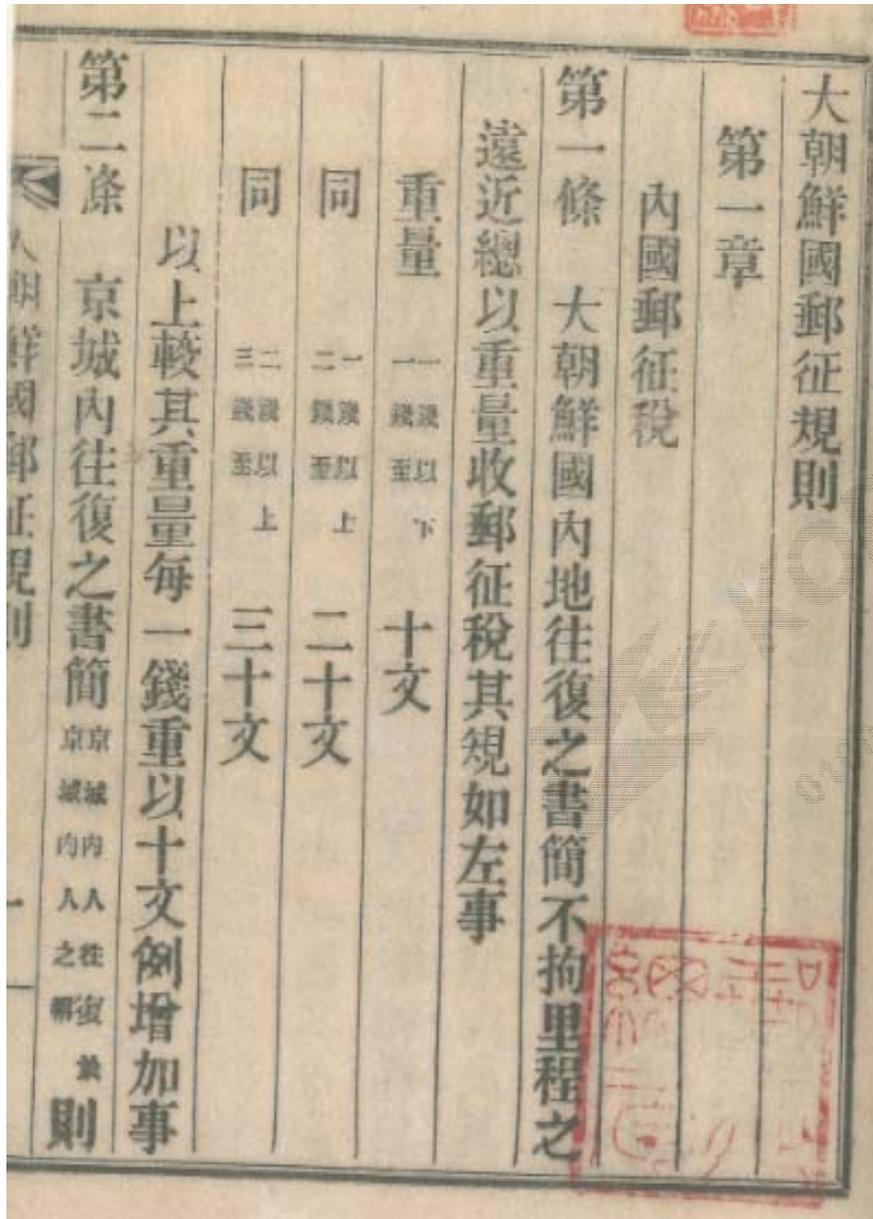


대조선국우정규칙

(大朝鮮國郵征規則)





대조선국우정규칙

제1장

국내우편요금

제1조

대조선국 국내를 왕복하는 서간(書簡)은 거리의 원근과 상관없이 중량에 따라 우편요금을 징수하며, 그 규칙은 다음과 같음.

중량 1전(錢) 이하부터 1전까지 10문(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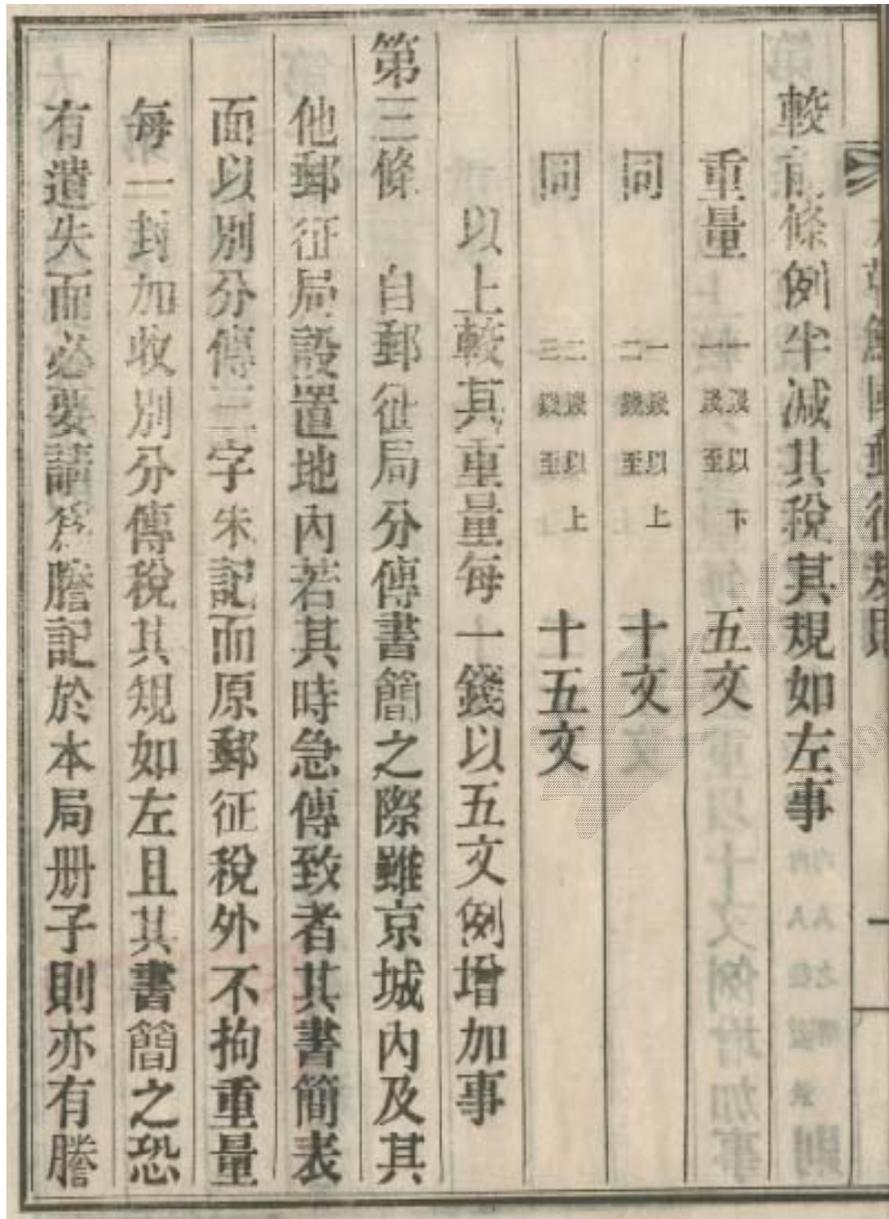
중량 1전 이상부터 2전까지 20문

중량 2전 이상부터 3전까지 30문

이상 그 무게가 1전중(錢重)씩 증가할 때마다 10문씩을 더 징수함.

제2조

경성 내에서 오고 가는 서간(경성 안 사람들이 경성 안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과 주고받는 서간)은



제1조를 기준으로 요금을 반감하며, 그 규칙은 다음과 같음.

중량 1전 이하부터 1전까지 5문

중량 1전 이상부터 2전까지 10문

중량 2전 이상부터 3전까지 15문

이상 그 무게가 1전씩 증가할 때마다 5문씩을 더 징수함.

제3조

우정국에서 서간을 분전(分傳)할 때, 비록 경성 지역 내 및 기타 우정국 설치지역 내일지라도 시급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면, 그 서간의 표면에 '별분전(別分傳)'이라는 세 글자를 붉은 글씨로 표기하고, 통상 요금 외에 중량에 관계없이 개당 별분전 요금을 추가로 징수하며, 그 규칙은 다음과 같음. 또 서간의 분실이 우려되면 우정국 책자에 등기(謄記)를.

記稅之徵收而此種郵征物不論通常稅別分傳
 稅總可先收其稅一併條記見別有事
 第一等郵征局地 二十文
 第二等郵征局地 十文
 第三等郵征局地 五文
 凡係書簡到着郵征局設置之地方則即日
設京城內及分傳之書簡 必當分傳而其分傳
設京城內及分傳之書簡 各有定時則書簡之到局或違定時雖或及
 時其分傳之路次亦有順序先後之別這間
 時刻自致遲滯故發送之人爲其急速分傳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 요금을 징수함. 그
 리고 이러한 종류의 우편물은 통상 요금과 별분전
 요금을 모두 먼저 징수함.(등기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논함)

제1등 우정국지(郵征局地) 20문

제2등 우정국지 10문

제3등 우정국지 5문

서간이 도착하는 곳이 우정국 설치 지방일 경우 당
 일에 반드시 분전함.(경성 내 및 기타 우정국 설치
 지역 내 서간의 분전) 분전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
 는데, 서간이 우정국에 정시를 위반하여 도착하기
 도 하고 비록 정시를 맞추더라도 분전하는 순서의
 선후 구별이 있으므로 그 사이 시간이 저절로 지연
 될 수 있음. 그러므로 발송인이 빠른 분전을 원할
 시 별분전

有此別分傳之加稅而郵征局則爲此一封
 書別發一脚夫卽速分傳事
 第四條 京城外及郵征局設置地外別分傳之書
 簡則原郵征稅外計其受納人居處之里程遠近
自分將程郵 每十里別分傳稅三十文式收捧而自
 某局至某地別分傳之由必朱記於書簡表面其
 他先收騰記等稅視第三條一般事
 但京城外及郵征局設置地外別分傳則自分
 傳之郵征局距受納人居處之遠近有難豫定
 矣此際則每十里卽收三十文其餘不足條自

요금을 더 지불하면 우정국에서 그 우편물 1건은
 특별히 빠른 우체부(一脚夫)에게 발송하여 즉시
 분전할 것임.

제4조

경성 외 및 우정국 설치 지방 외에서 별분전 서간
 은 통상 요금 외에 수납인의 거주지까지의 거리 원
 근을 계산하여(분전하는 우정국으로부터 계산한
 거리) 10리(里) 당 별분전 요금 30문씩을 징수하
 며, 모 우정국에서 모 지역까지 별분전의 경유 이
 력을 반드시 서간 표면에 붉은 글씨로 표기할 것.
 기타 등기 요금 등 선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3
 조를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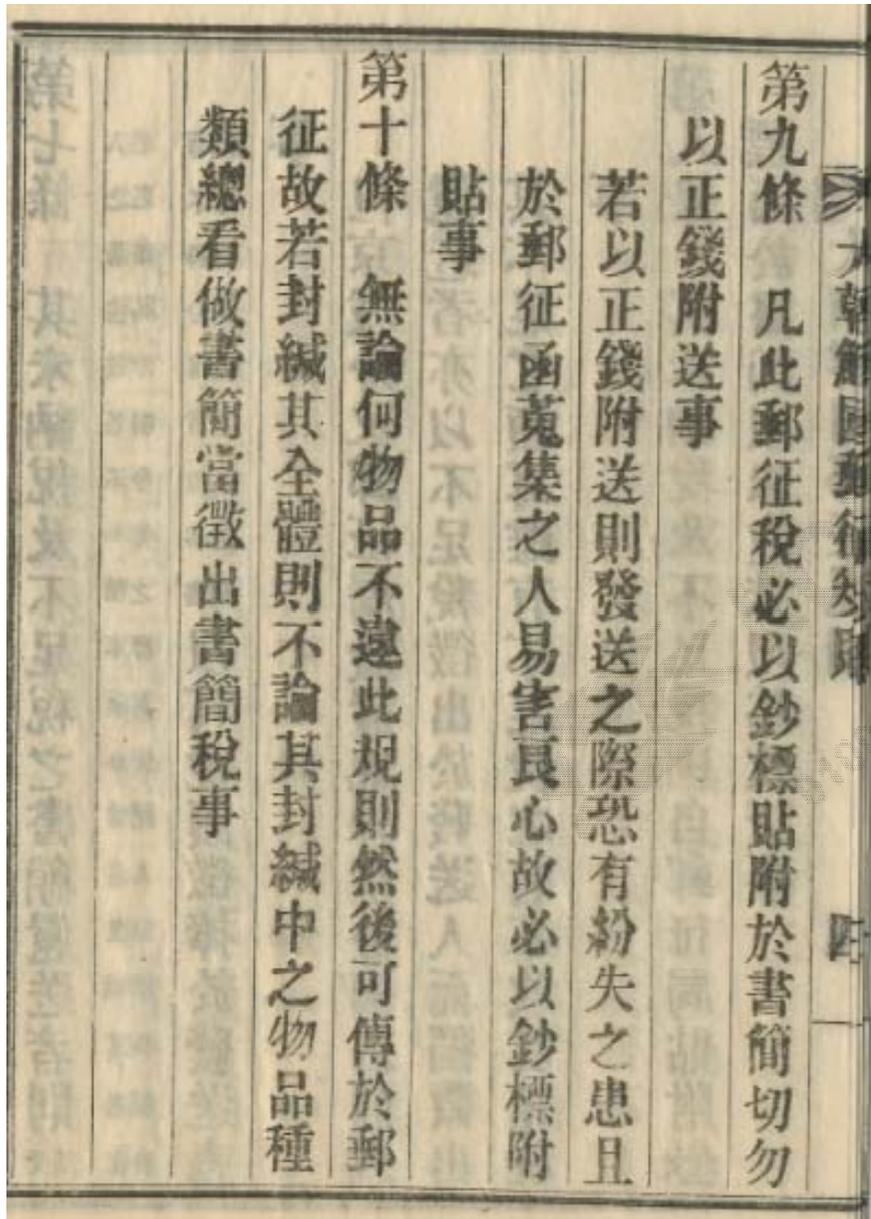
단, 경성 외 및 우정국 설치 지방 외의 별분전의 경
 우 분전하는 우정국부터 수납인의 거쳐까지의 거
 리 원근을 미리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
 경우는 10리 당 30문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大韓領事館章程
 三
 稅中除之其不足之十文以倍稅二十文徵捧
 又譬如一兩重書簡原稅當爲一百文而只貼
 八十文鈔標則其不足爲二十文也以其不足
 二十文之倍稅四十文卽地徵捧而餘皆倣此
 事
 右二錢重內一錢之不足一兩重內二錢之
 不足者雖二錢以下一錢以上分假重如一錢九
錢分皆以二錢重例同樣而強過一錢重則雖
 未滿二錢卽以二錢重稅二十文貼標然後
 可無不足稅之患事

통상 요금에서 부족한 10문의 1배의 부과금을 더
 한 20문을 징수함.

또 예를 들면, 1냥중(兩重) 서간의 통상 요금이
 100문인데, 80문의 우표만 부착되어 있으면 부족
 한 요금은 20문임. 그 부족한 20문의 1배의 부과
 금을 더한 40문을 즉시 징수함. 다른 경우도 모두
 이와 같이 할 것.

위 2전중에서 1전의 부족과 1냥중에서 2전의 부
 족은 비록 1전 이상 2전 이하(가령 1전 1분중(分
 重), 1전 9분중과 같은)의 경우이지만, 모두 2전
 중의 예와 같이 함. 1전중을 많이 넘으면 비록 2
 전 미만일지라도 2전중의 요금인 20문의 우표를
 더 부착한 후에야 요금 부족의 우려가 없을 것임.



第九條 凡此郵征稅必以鈔標貼附於書簡切勿以正錢附送事

若以正錢附送則發送之際恐有紛失之患且於郵征函蒐集之人易害良心故必以鈔標附貼事

第十條 無論何物品不違此規則然後可傳於郵征故若封緘其全體則不論其封緘中之物品種類總看做書簡當徵出書簡稅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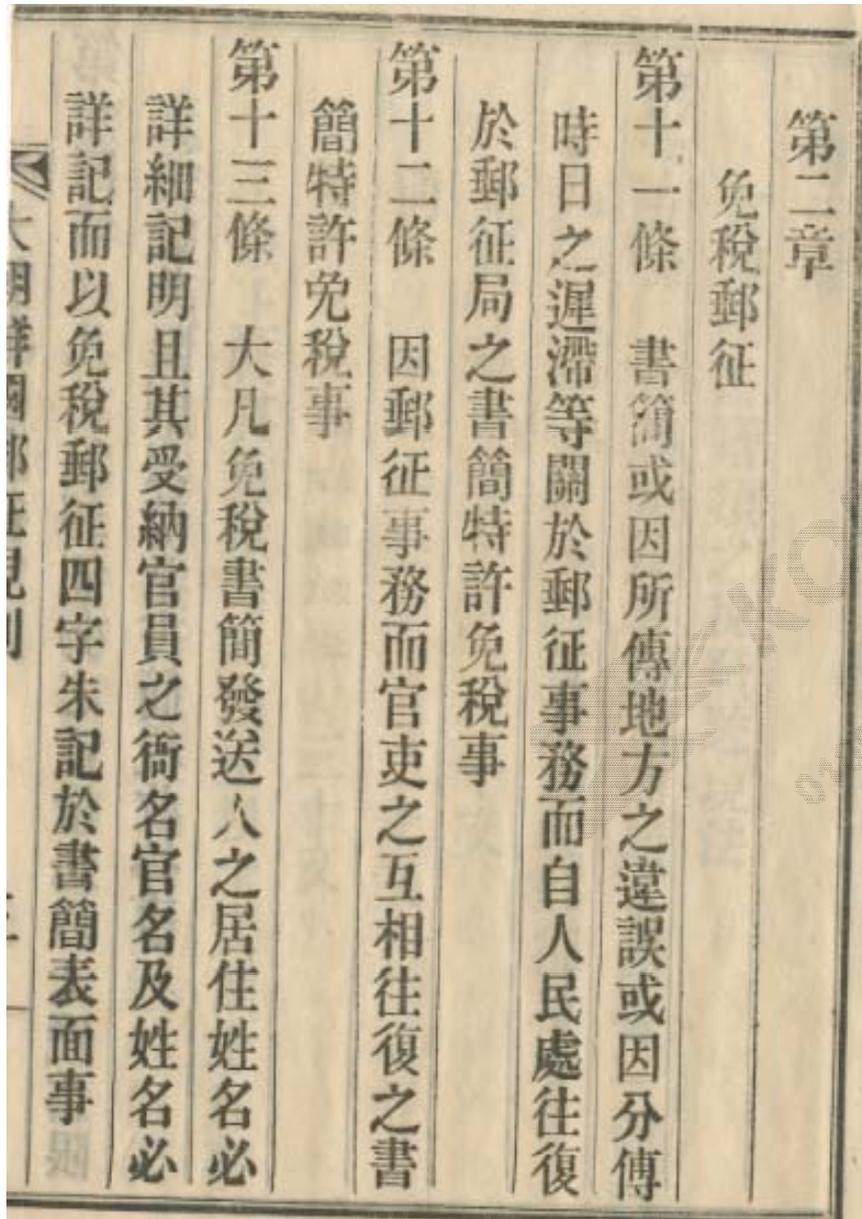
제9조

우편 요금은 반드시 우표를 서간에 부착하는 것으로 지불하며, 절대 현금으로 첨부하여 보낼 수 없음.

만약 현금으로 첨부하여 보내면 발송 시 분실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우체통에서 수거하는 자의 양심을 해치기 쉬우므로 반드시 우표를 부착할 것

제10조

규정에 맞는 물품만 우편으로 배송할 수 있음. 따라서 전체를 봉해서 내부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해당 물품은 서간으로 간주해서 서간에 해당되는 요금을 징수함.



제2장

면세우편

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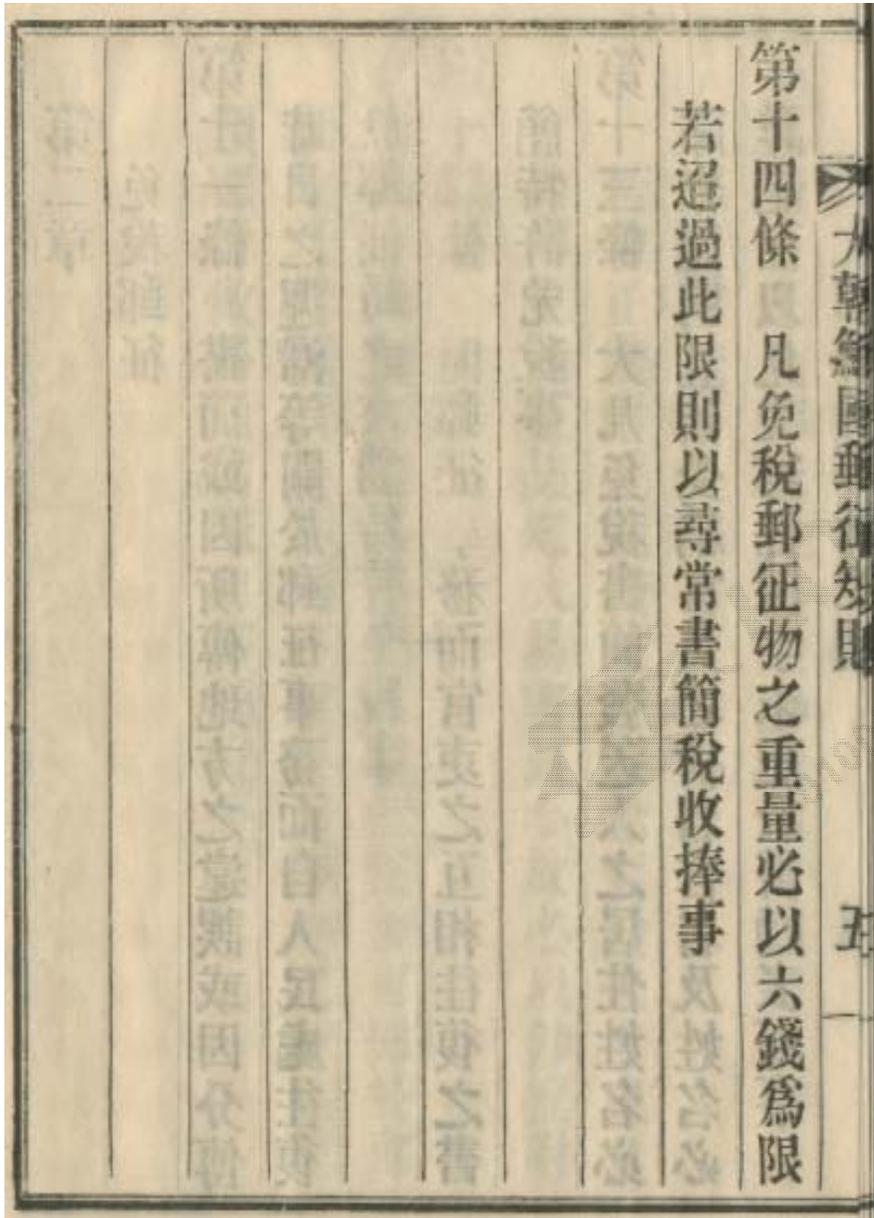
지방 배달의 오류나 분전 시일의 지체 등 우정사무의 문제로 인해 인민과 우정국 간에 왕복한 서간은 특별히 요금 면제를 허가함.

제12조

우정사무로 인하여 관리 상호 간에 주고받는 서간은 특별히 요금 면제를 허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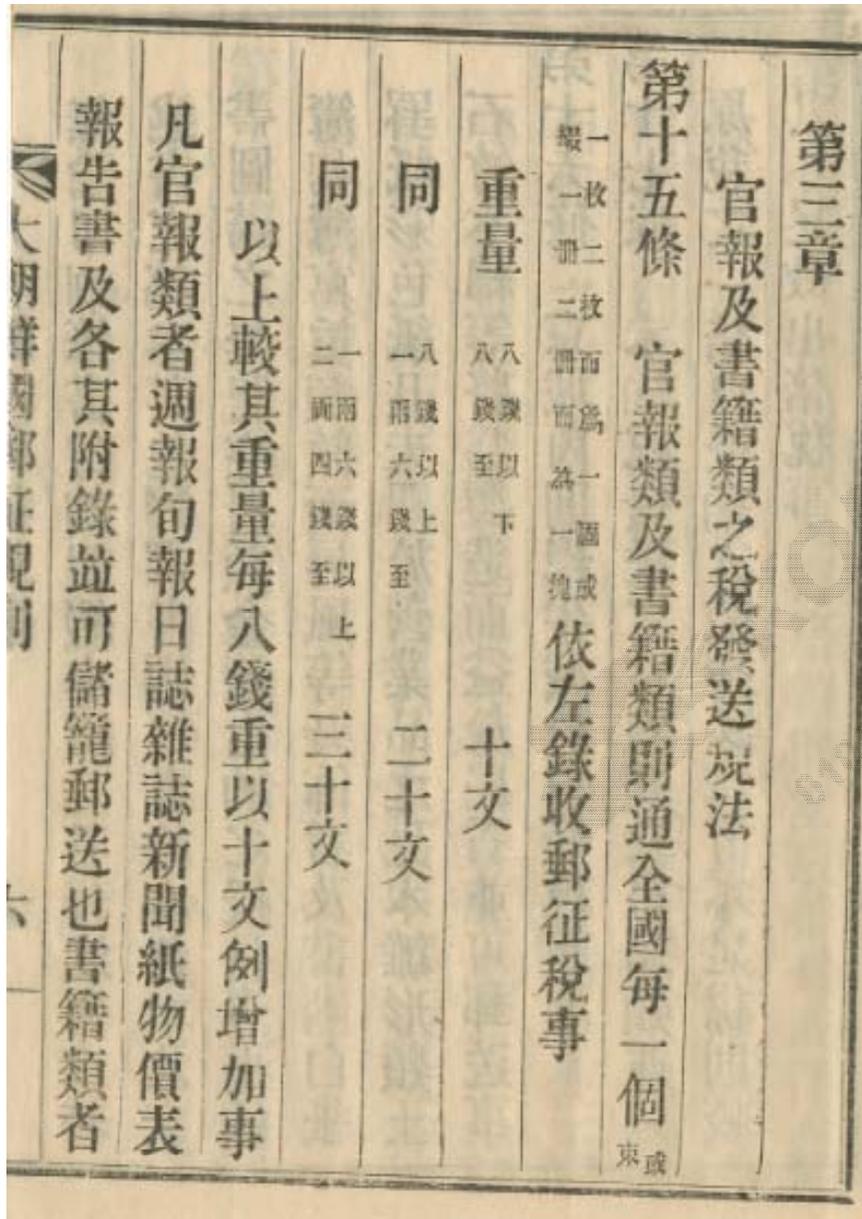
제13조

요금 면제 서간은 발송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상세히 기재하고, 또 수납하는 관원의 관아명, 관직명 및 성명을 반드시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면세우정' 이라는 4글자를 붉은 색으로 서간 표면에 기록할 것



제14조

면세 우편물의 중량은 반드시 6전까지를 한도로 하며,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면 서간에 적용되는 보통 우편 요금을 징수함.



제3장

관보 및 서적류의 요금 및 발송 규법

제15조

관보류 및 서적류는 국내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게 1개 당(1매, 2매를 묶은 것을 1개라 하고, 1책, 2책을 철한 것을 1몽치(塊)라 함.) 다음과 같이 우정 요금을 징수함.

중량 8전 이하부터 8전까지 10문

중량 8전 이상부터 1냥(兩) 6전까지 20문

중량 1냥 6전 이상부터 2냥 4전까지 30문

이상 중량 8전중 마다 10문씩 늘어나는 예에 따라 증가

관보류라 함은 주보, 순보, 일지, 잡지, 신문지, 물가표, 보고서 및 그 부록들이며, 모두 바구니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 서적류라 함은



인쇄 및 필사로 된 가본철, 저술서, 저술서의 원고본, 기타 번역서, 편찬서, 그림책 및 문서나 도화와 같은 기록이 없는 공책류, 금전출납부, 사진류, 액자, 병풍 등 장식물 및 서화, 백지, 과지, 채색지, 영업품의 견본이 되는 소포장류, 그리고 토석, 죽목, 목화 등 장차 제조하여 백성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이며, 모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

제16조

경성 내에서 주고받는 물품은 전 조항에 의거하여 금액을 모두 반감함.

제17조

요금을 미납한 채 발송한 관보류 및 서적류는 모두 통상 요금의 1배의 부과금을 수납인에게 징수하고, 부족 요금이 있을 경우 그 부족분의 1배의 부과금을 징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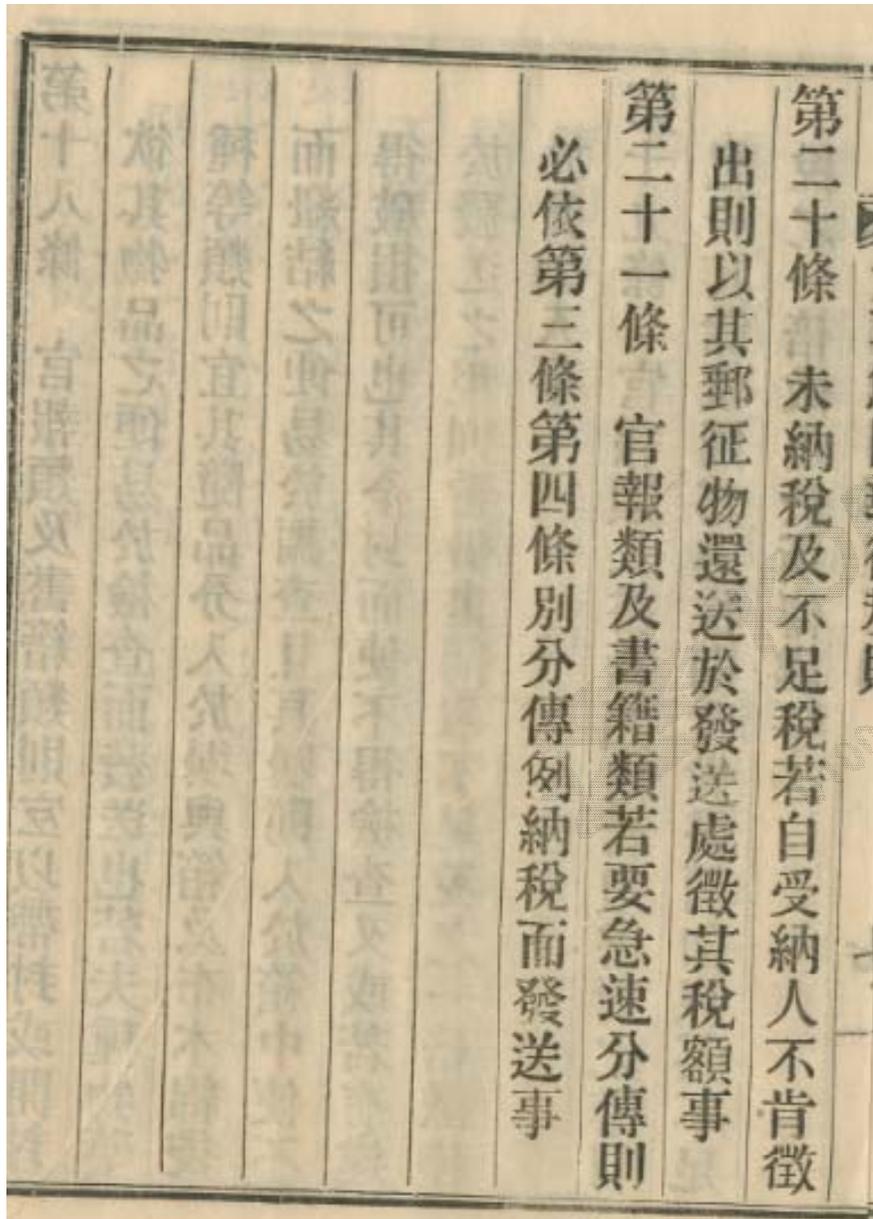
第十八條 官報類及書籍類則宜以帶封或開封
 欲其物品之便易於檢查而發送也若夫種物藥
 種等類則宜其隨品分入於塼與箱及布木綿袋
 而紐結之便易於調查且其塼則入於箱中使不
 得破損可也其全封而使不得檢查又或若有違
 於發送之規則看做書簡以不足稅之一倍徵捧
 於受納人事
 第十九條 官報類及書籍類內若以書簡之辭冒
 記於其餘紙圖爲逃稅則看做書簡卽以其不足
 稅之一倍徵出於所傳處事

제18조

관보류와 서적류는 물품 검사에 편리하도록 종이 띠로 두르거나 개봉하여 발송함. 만약 보내는 물건이 종자나 약재 등의 종류이면 품목별로 나누어 항아리와 상자 및 포목과 면자루에 넣고 끈으로 묶어 조사하기 편리하게 할 것. 또한 항아리는 상자 안에 넣어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물품을 완전히 봉하면 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발송 규정을 위반한 물품은 서간으로 간주하여 부족한 요금의 1배의 부과금을 수납인에게 징수함.

제19조

관보류 및 서적류 안에 남은 지면에 서간의 글을 적어서 요금을 회피하려고 할 경우, 이는 서간으로 간주하여 그 부족한 요금의 1배의 부과금을 수취처에 징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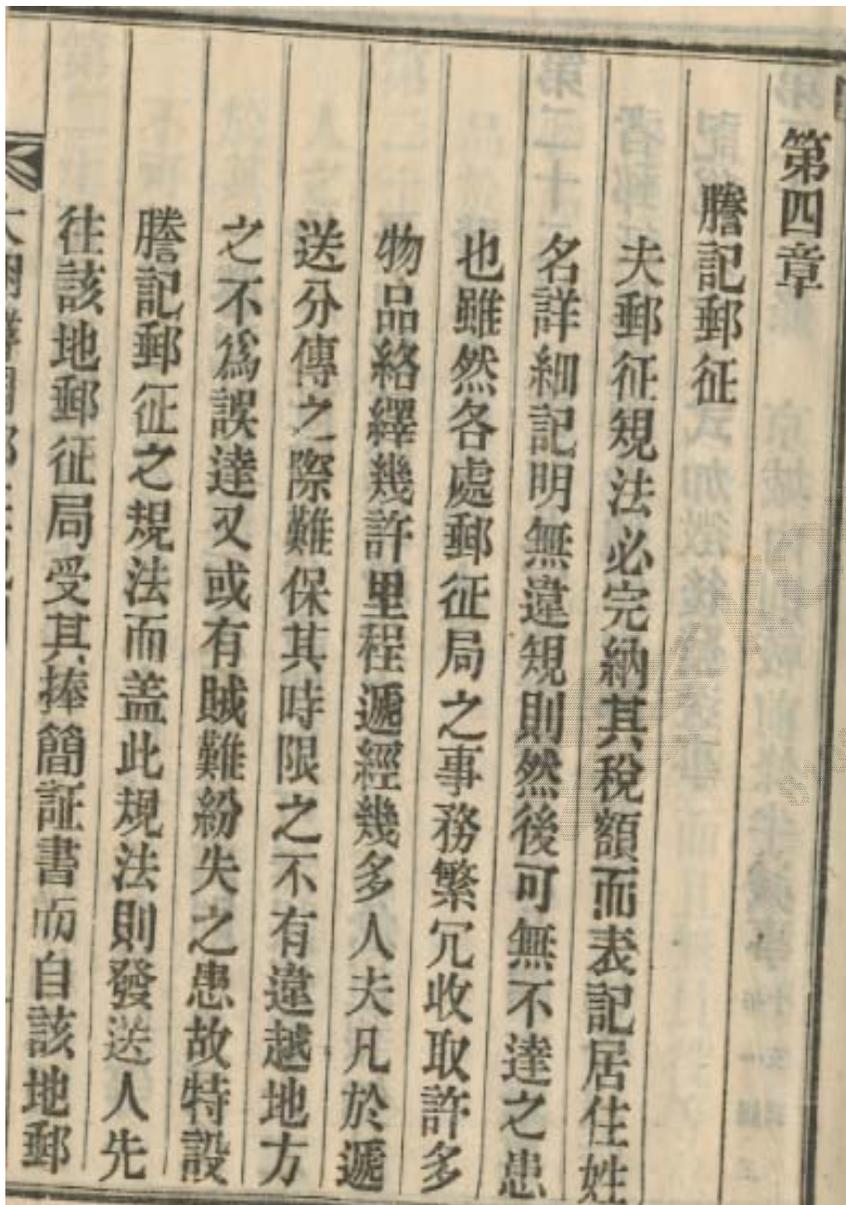


제20조

미납 요금 및 부족 요금을 수납인이 납부하고자 하지 않으면 해당 우편물은 발송처로 환부하고 해당 요금을 징수함.

제21조

긴급 분전이 필요한 관보류 및 서적류는 제3조와 제4조의 별분전 규정에 의거하여 요금을 납부하고 발송함.



제4장

등기우편

우정법규에 따라 반드시 요금을 완납하고 주소와 성명을 상세히 기재하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뒤에야 배송되지 않을 우려가 없을 것임. 하지만 비록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더라도 각지의 우정국 사무가 번다하고 수취하는 물품도 매우 많으며 전달 거리도 멀 뿐 아니라 여러 우체부를 거쳐야 하므로, 체송, 분전 시 기한을 지키기 어렵거나 잘못 배송될 우려가 있고 또 도난

으로 분실될 우려도 있음. 그러므로 특별히 등기우편 법규를 만들었으니, 발송인이 먼저 해당지역 우정국으로 가서 서간을 보냈다는 증서를 받고, 해당 지역

征局遞送各地方郵征局之際詳細認明以
 其發送人及受納人之居住姓名番號等一
 一騰記於帳簿而及至受納處則必受其受
 納人之証書以爲證明則可無誤傳遺失之
 憂而縱值賊難紛失之會必爲急速報知於
 發送人或受納人事
 第二十二條 書簡及官報書籍類之凡關大緊要
 者郵征原稅額外通國內郵征物每一個各以騰
 記稅六十文式加徵後發送事
 第二十三條 京城內則較前條半減事
每文一圓 式三

우정국으로부터 각 지역 우정국으로 배송 시 발송
 인 및 수납인의 주소, 성명, 번지 등을 일일이 장부
 에 기록해 두고, 수납처에 도착 시에도 수납인의
 증서를 받아서 증명해 두면, 오배송이나 분실의 우
 려가 없을 것이고, 만약 도난으로 분실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발송인 또는 수납인에게 통지할 수 있을
 것임.

제22조

중요한 서간 및 관보, 서적류는 국내의 경우 배송
 지역에 관계없이 통상 요금 외에 우편물 1개 당 등
 기 요금 60문씩을 더 징수한 후 발송함.

제23조

경성 내에서 주고받는 우편물은 전 조항에 의거하
 여 금액을 모두 반감함.(1개 당 30문씩)

第二十四條 雖騰記郵征亦不無賊難等紛失之患然其紛失之蹤跡易於究覈而且無員役等怠慢粗漏之弊也若或有紛失之會則嚴加查覈如物品之種類不難于償求者次第追究辦償其物品於當該紛失之人

因恐慢粗漏而紛失者論事可辨償惟水火盜賊勿論

第二十五條 騰記郵征發送之時以發送人受納人之居住姓名詳記於表面且以騰記二字朱記於其上而往付於郵征局必受其捧受之証書決不可投入於郵征箱中事

第二十六條 騰記稅則依郵征本稅例以鈔標貼

七月 羊 國 事 正 見 山

제2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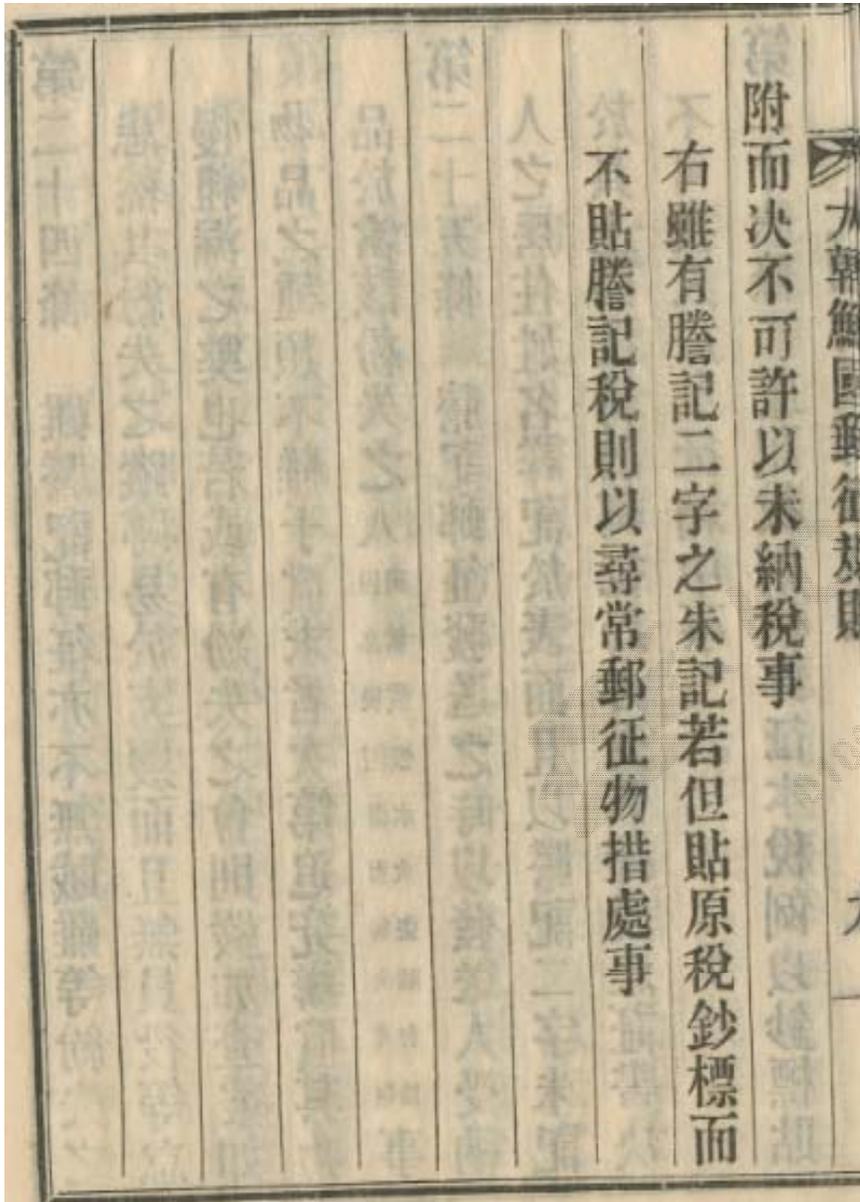
등기우편 또한 도난 등으로 인한 분실 우려가 없지 않으나, 분실의 종적을 조사하여 밝히기 쉽고, 또 직원 등의 태만이나 누락의 폐단이 없음. 분실하는 경우가 있으면 엄히 조사하여, 변상이 어렵지 않은 종류의 물품이면 분실한 직원을 차례로 추적해 찾아서 물품을 변상시킬 것임. (태만, 누락으로 인하여 분실한 것은 직원에게 변상시키지만, 물, 불, 도적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음.)

제2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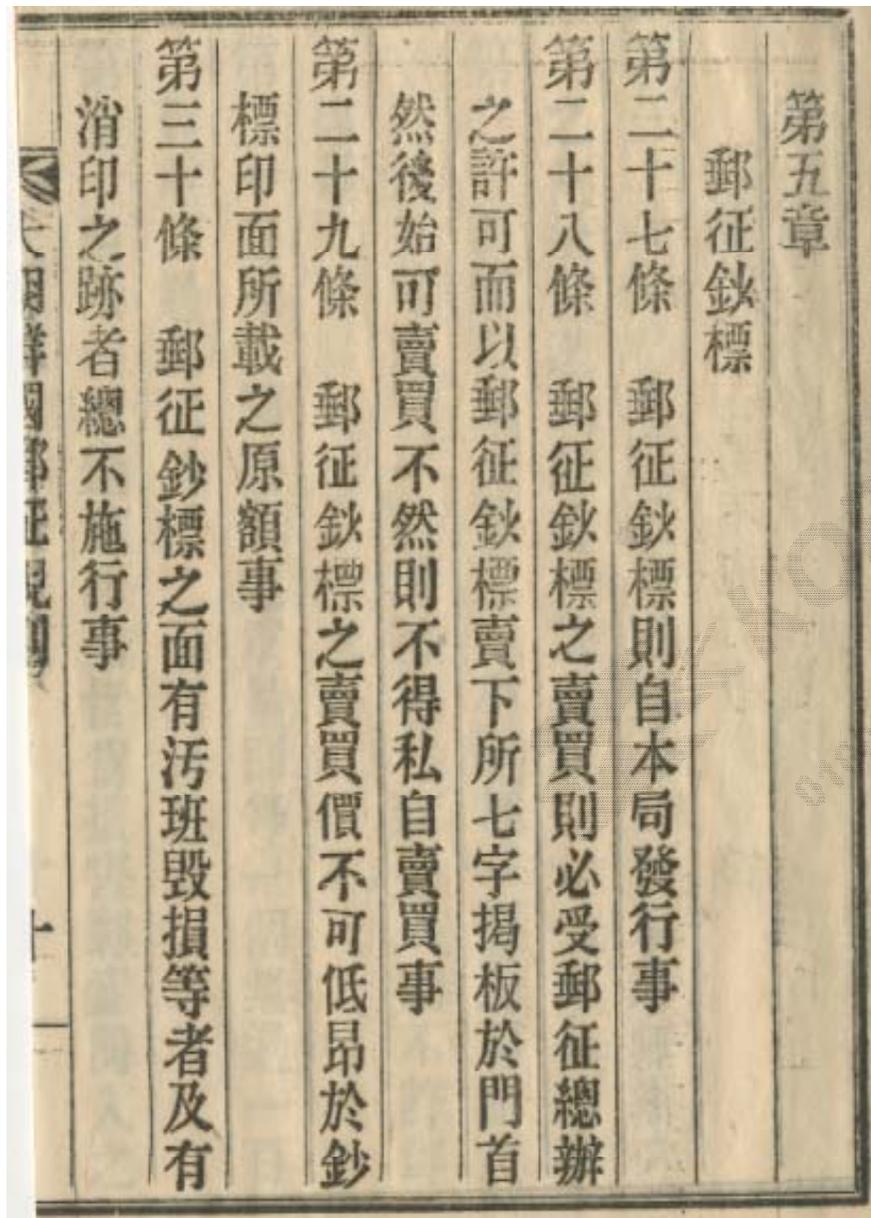
등기 우편의 발송 시에는 발송인과 수납인의 주소, 성명을 표면에 상세히 기록하고 '등기' 라는 두 글자를 그 위에 붉은 색으로 기재해야 함. 또한 반드시 우정국에 가서 부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절대 우체통에 투입할 수 없음.

제26조

등기 요금은 통상 우편 요금의 경우와 같이 우표로 부착하며,



절대로 요금의 미납은 허가하지 않음.
 비록 '등기' 라는 두 글자를 붉은 색으로 기재했더라도, 통상 요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우표만 부착되어 있고 등기 요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우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 우편물로 취급함.



제5장

우표

제27조

우표는 반드시 우정국에서 발행함.

제28조

우표의 매매는 반드시 우정총판의 허가를 받고 '우정초표매하소(郵征鈔標賣下所)' 라는 일곱 글자가 적힌 간판을 문에 건 후에 비로소 매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사로이 매매할 수 없음.

제29조

우표의 매매가는 우표의 인면(印面)에 표기된 금액보다 높거나 낮을 수 없음.

제30조

우표에 오염, 훼손이 있는 것이나 소인의 흔적이 있는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없음.



제6장

잡칙

제31조

우편물의 손실에 대해 우정국에서 변상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므로 발송인은 포장에 주의해야 함.(다만 훼손되지만 양게 하고, 검사하기에는 편리하도록 해야 함.)

제3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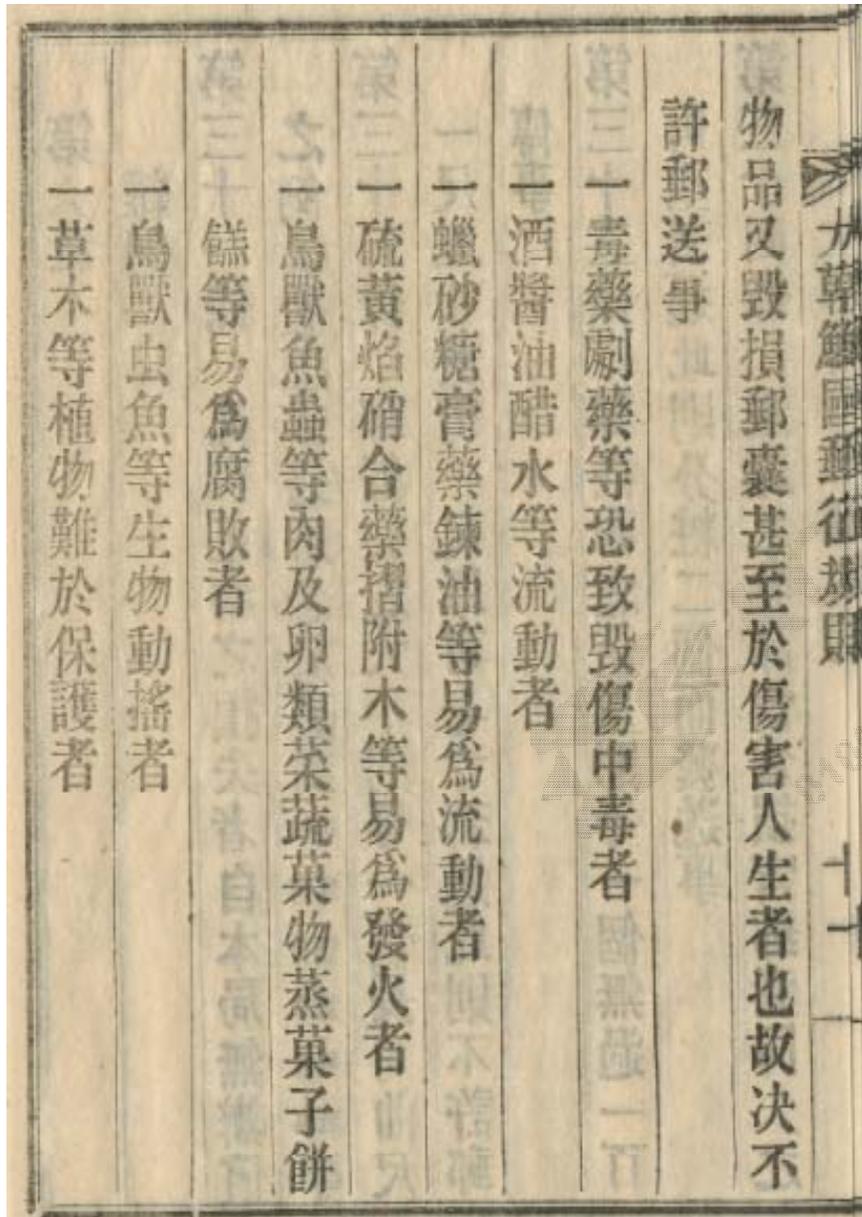
우편물의 규격은 1개 당 길이 곡척(曲尺) 1척(尺) 5촌(寸), 너비 1척, 두께 7촌 이내임. 만약 이를 초과하면 우편 배송을 불허함.

제33조

우편물의 중량은 1개 당 100냥중을 초과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초과하면 2개로 분리하여 발송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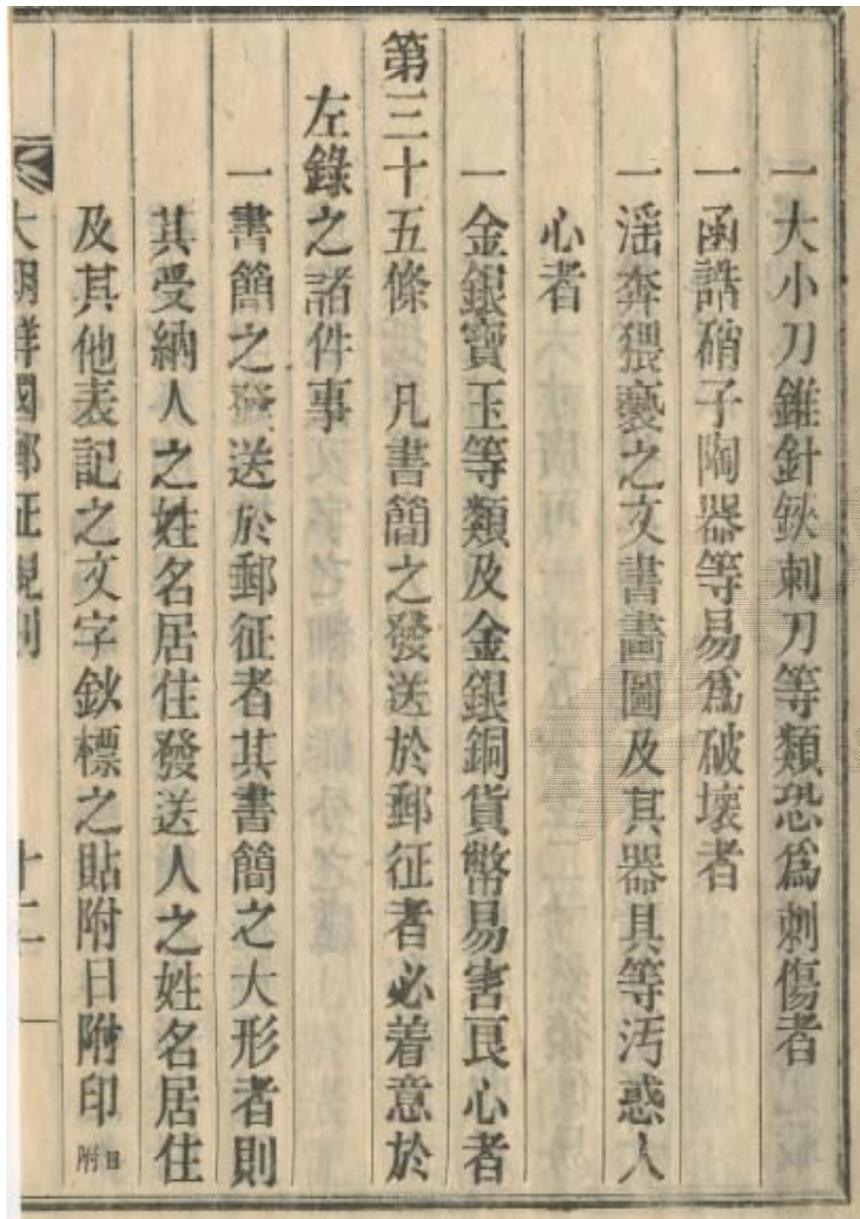
제34조

다음에 기재된 물품은 우편자루에 들어 있는 물품에 손해를 입히고



우편자루를 훼손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인명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절대 우송을 불허함.

- (1) 독약, 극약 등 훼손,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것
- (2) 술, 장, 기름, 식초, 물 등 흐르는 것
- (3) 밀납, 모래, 설탕, 고약, 연유(鍊油) 등 흐르기 쉬운 것
- (4) 유황, 염초, 화약, 성냥 등 발화하기 쉬운 것
- (5) 조수, 어충의 고기와 알류, 채소, 과일, 찌과자(蒸菓子), 떡과 반찬 등 부패하기 쉬운 것
- (6) 새, 짐승, 벌레, 물고기 등 살아서 움직이는 것
- (7) 초목, 식물 등 보호하기 어려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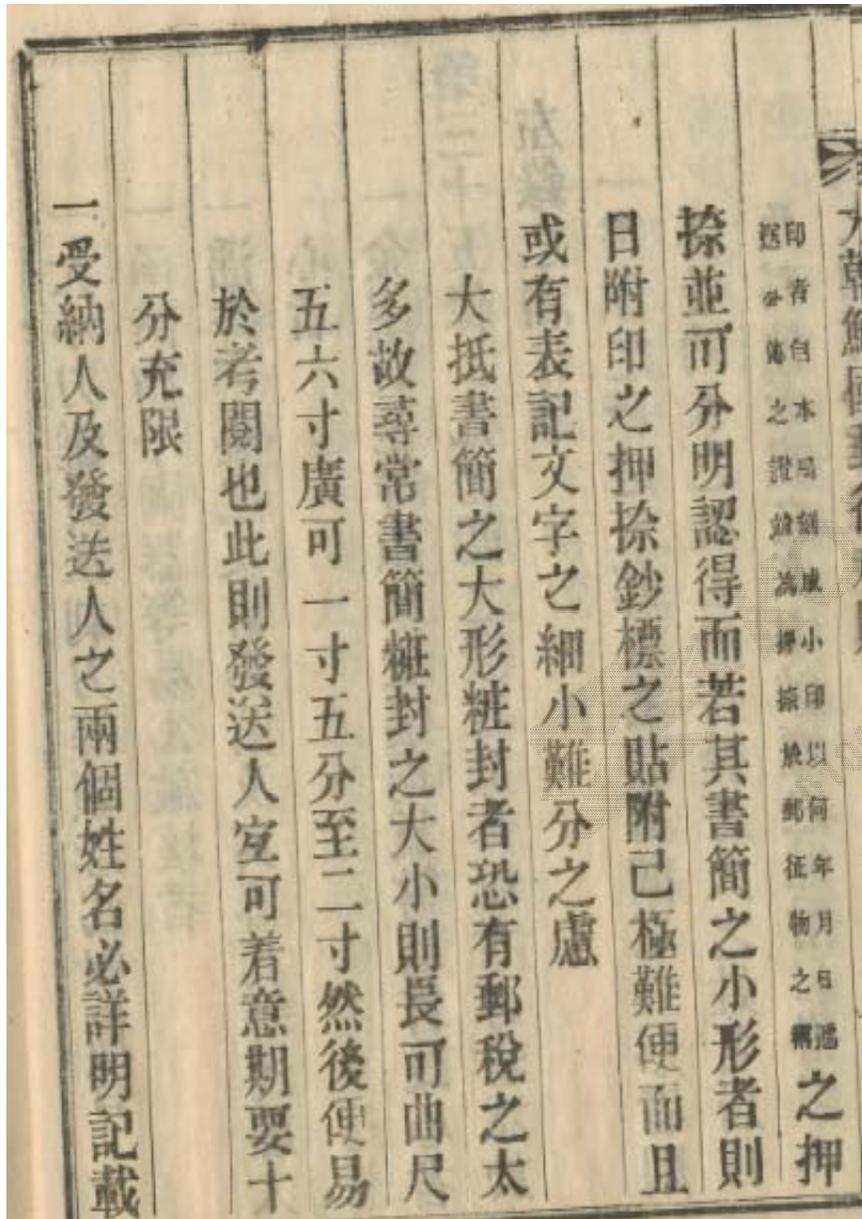


- (8) 크고 작은 칼, 송곳, 바늘, 가위, 자도(刺刀) 등 자상의 우려가 있는 것
- (9) 통조림, 유리, 도자기 등 깨지기 쉬운 것
- (10) 음란, 외설한 문서, 그림 및 기구 등 민심을 현혹하는 것
- (11) 금은보옥류 및 금은동화의 화폐 등 양심을 해치기 쉬운 것

제35조

서간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반드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것

- (1) 서간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서간이 대형이면 수납인의 성명과 주소, 발송인의 성명과 주소 및 기타 문자의 표기, 우표 부착, 날짜 도장



(날짜도장이라는 것은 우정국에서 연월일이 들어간 소인을 새겨서 언제 체송, 분전했는지에 대한 증명을 우편물에 날인하는 것)의 날인이 모두 가능하여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으나, 만약 서간이 소형이면 날짜 도장을 날인하고 우표를 부착하는 것만도 어려울 뿐 아니라 표기된 문자가 있어도 작아서 분별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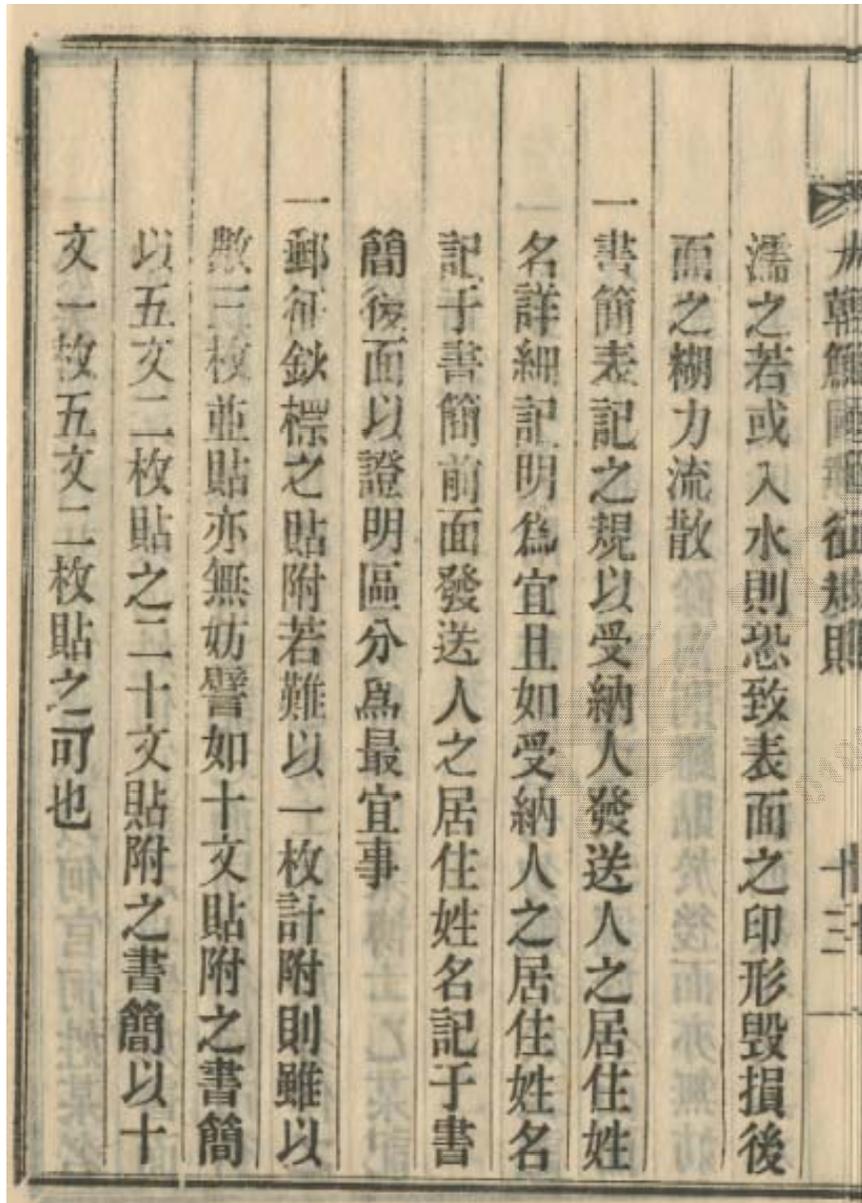
서간의 봉투가 대형이면 우편 요금이 비싸지는데, 보통 우편의 봉투 크기로는 길이 곡척 5, 6촌, 너비 1촌 5분에서 2촌까지가 점검에 용이하므로, 발송인은 이러한 한도를 충족시키도록 주의할 것.

(2) 수납인과 발송인 양측의 성명을 반드시 상세히 표면에 기재해야 함.



관직이 있는 사람일 경우 반드시 ‘관직+성+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절대 ‘성+관직’으로 기재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서면에 ‘갑 장군, 을 박사’로 기재한다면 해당 관서 혹은 해당 지역에 또 다른 갑 장군, 을 박사가 있을 경우 분전이 어려움. 그러므로 반드시 ‘장군 갑 모모, 박사 을 모모’로 기재해야 함.

(3) 우표를 서간에 부착할 때, 절대 겹봉에 기재된 글씨를 침범하지 말아야 함. 만약 겹봉 전체에 글자를 기재하여 우표를 부착할 여백이 없다면 뒷면에 붙여도 무방함. 또한 우표 부착 시 반드시 침으로 붙이고, 절대 물을 적시지 말 것.



만약 물을 적시면 표면에 인쇄된 내용이 훼손되고 접착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4) 서간의 표면에는 수납인과 발송인의 주소, 성명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데, 수납인의 주소와 성명은 서간의 앞면에,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은 서간의 뒷면에 기록하여 구분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함.

(5) 우표를 부착할 때 1장만으로는 요금이 부족하다면 2-3장을 함께 부착해도 무방함. 예를 들어, 10문 우표를 부착해야 하는 서간이라면 5문 우표 2장을 부착할 수 있고, 20문 우표를 부착해야 하는 서간이라면 10문 우표 1장과 5문 우표 2장을 부착할 수 있음.



제36조

서간의 표면에 기재된 주소와 성명이 불분명하여 수납인에게 배달하기 어렵거나 발송인에게 환부하기 어려운 서간을 ‘몰서(沒書)’ 라고 함. 몰서는 마땅히 관에서 몰수함.

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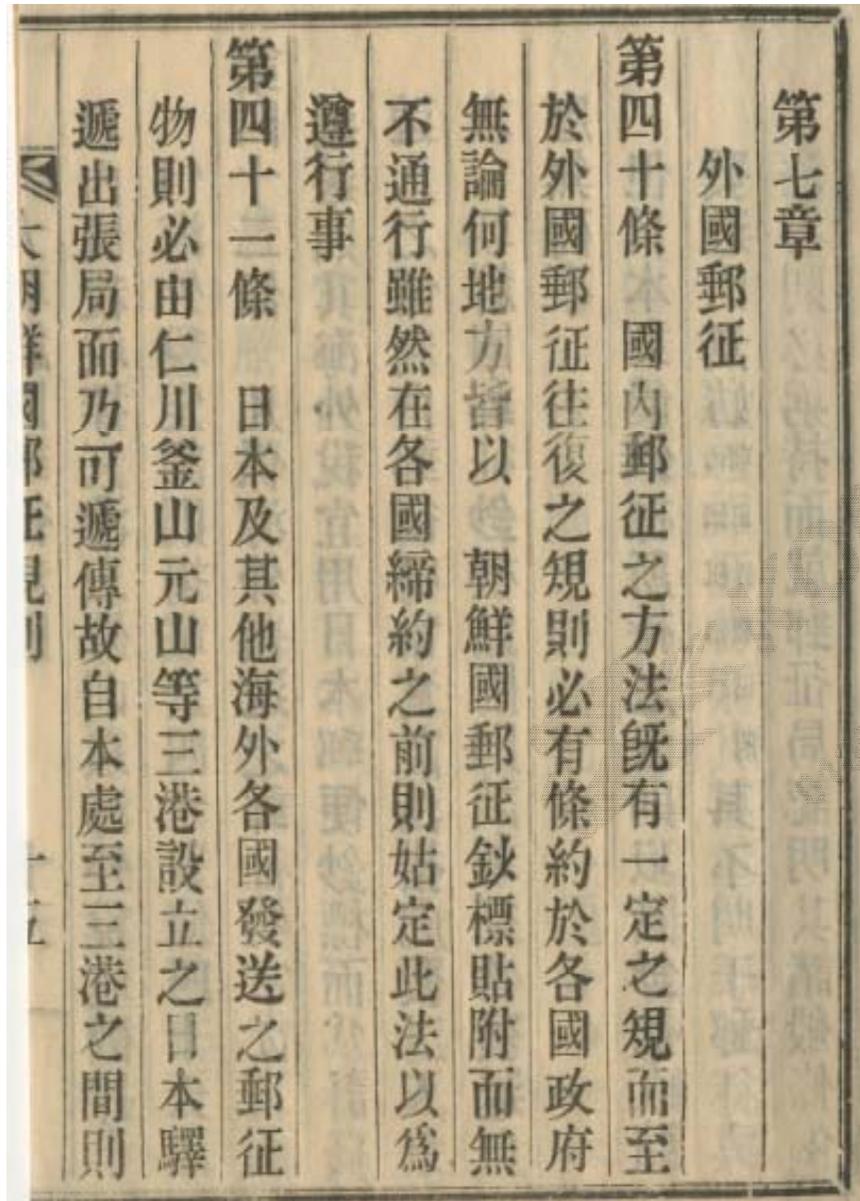
우정국의 등급을 3가지로 나누고, 1등, 2등, 3등으로 칭하며, 그 설치한 지방과 등급은 모두 포고할 것임.

제38조

관보 및 서적류의 표면 표기와 우표 부착 방법은 서간과 동일함.

제39조

정월 초하루는 우정 휴무일임.



제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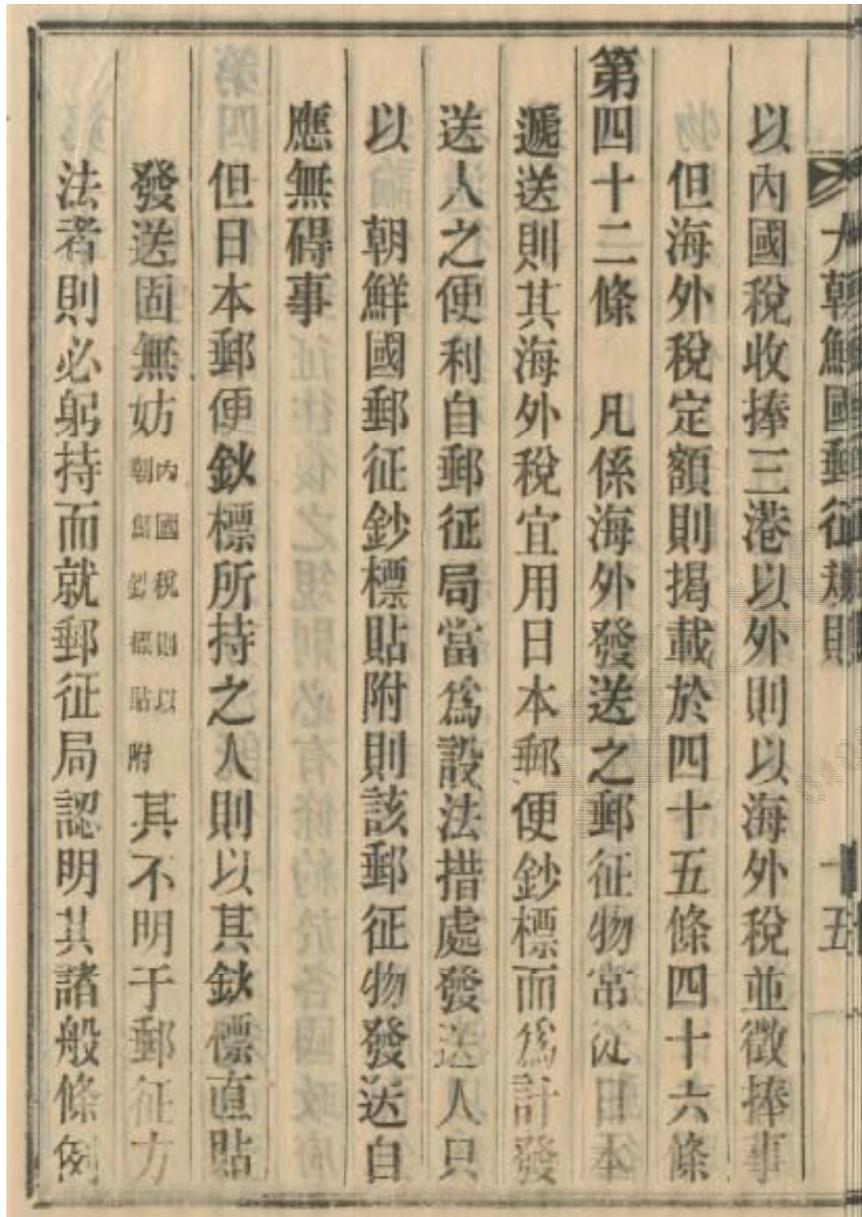
외국 우정

제40조

국내우편의 방법은 이미 일정한 규칙이 있으나, 국제우편의 왕복 규정은 각국 정부와 조약을 맺은 후 세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조선국 우표를 부착하여 통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그러나 아직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기 전이므로 잠시 본 법규를 준행함.

제41조

일본 및 기타 해외 각국에 발송하는 우편물은 반드시 인천, 부산, 원산 3개 항에 설립된 일본 역체국 출장소를 경유하여 배달함. 그러므로 국내에서 3개 항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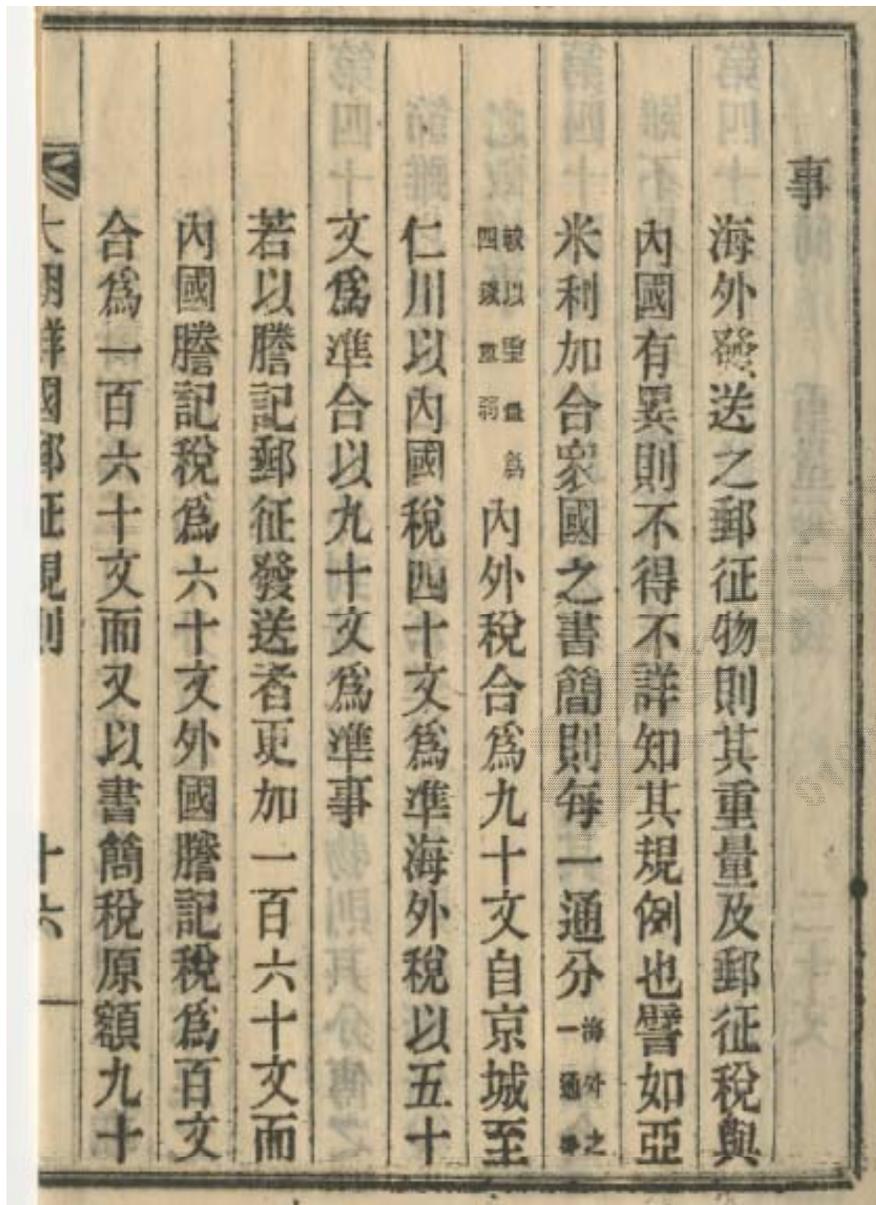
국내 요금을,
3개 항 밖은 해외 요금을 적용하는데, 모두 한꺼번
에 징수함.

단, 해외 요금의 액수는 제45조와 제46조에 게재
함.

제4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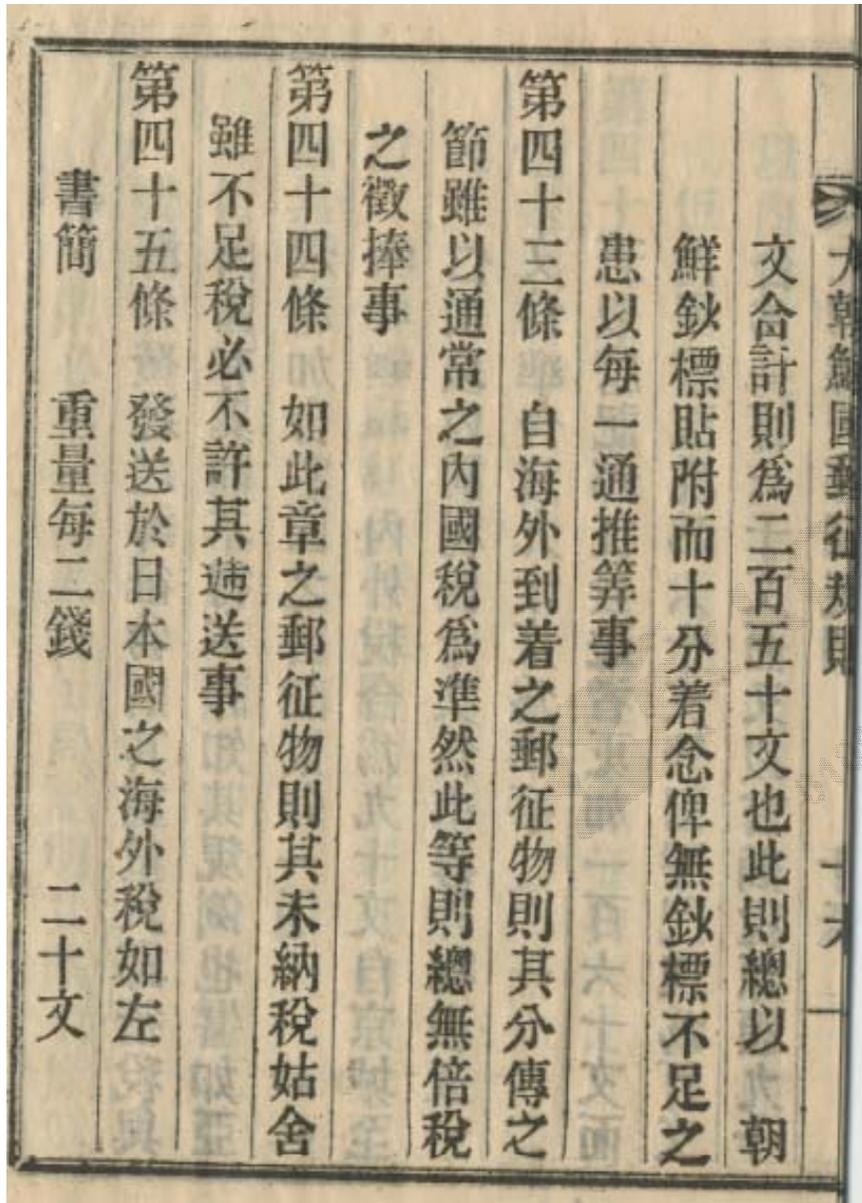
해외로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상 일본의
체송을 따르므로 해외 요금도 마땅히 일본 우표를
사용해야 하지만, 발송인의 편리를 위하여 우정국
에서 법규를 설치, 조처함에 따라 발송인이 조선국
우표만 부착하여도 우편물 발송에는 무방함.

다만 일본 우표를 소지한 자는 그 우표를 직접 부
착하여 발송해도 무방함.(국내 요금은 조선 우표로
부착) 우편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
우 반드시 직접 우편물을 가지고 우정국에 나와서
제반 조례를 확인할 것.



해외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그 중량 및 우편
 요금이 국내 우편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상세히 그
 규례를 인지해야 함. 예를 들어, 미국으로 가는 서
 간이면 1통(해외 우편의 1통 당 중량은 4전중 미
 만)에 국내 요금과 해외 요금을 합하여 총 90문인
 데, 경성에서 인천까지 국내 요금 40문과 해외 요
 금 50문을 합하여 90문이 됨.

만약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면 160문이 부
 가되는데, 국내 등기 요금 60문, 국제 등기 요금
 100문을 합하여 160문이며, 여기에 서간의 원래
 요금 90문을



합하면 총 250문임. 이를 모두 조선 우표로 부착하
고, 우표가 부족하지 않도록 십분 유념하여 1통 당
요금을 추산할 것.

제43조

해외로부터 도착하는 우편물은 분전 시 통상의 국
내 요금에 따르지만, 그러하더라도 1배의 부과금
항목은 징수하지 않음.

제44조

본 장의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는 요금을 미납한 우
편물은 고사하고 요금이 부족한 우편물도 발송을
허가하지 않음.

제45조

일본으로 발송하는 해외 요금은 다음과 같음.

서간 : 중량 2전중 마다 20문

| | | |
|----------------------|----------------------------|-----|
| 官報類 | 重量每一兩六錢 | 二十文 |
| 書籍類 | 重量每一兩六錢 | 二十文 |
| 騰記稅 | 每一個 <small>物不明其種類征</small> | 六十文 |
| 第四十六條 由日本國而發送於各國之海外稅 | | |
| 如左表 | | |

七月洋國郵正見り

관보류 : 중량 1냥 6전중 마다 20문
 서적류 : 중량 1냥 6전중 마다 20문
 등기 요금 : 1개 당(우편물 종류는 무관) 60문

제46조

일본을 경유하여 세계 각국으로 발송하는 우편 요금은 다음의 표와 같음.

路由日本國發送外國之郵征稅表

日本國雖入於聯合國中而以其稅額之別有揭載者故不入此中

| 國名 | 線路 | 稅額 | 商見本 | 商用之書類 |
|------|------|------------|-----|-------|
| 萬日耳曼 | 墨西哥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亞非利加 | 滿得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郵國 | 那威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征白耳義 | 和蘭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伯西兒 | 白露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聯丁抹 | 波斯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埃及 | 葡萄牙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合西班牙 | 羅馬尼亞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條米合 | 塞爾維亞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約佛蘭西 | 薩瓦多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國加那太 | 瑞典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名希臘 | 瑞西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伊太利 | 土耳其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廈門 | 海豐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廣東 | 仙頭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安南 | 漢江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福州 | 寧波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臺灣 |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香港 | 直航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上海 |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 浦鹽斯德 | |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 同上 | 同上 |

以聯合國同稅發送於廈門廣東等地之郵征物則雖經附香港而發送至於騰記則只可限以香港郵便局出張所注重量一ユロ即日本國二分六六毛也十五ユロ即日本國三勿九分九厘三毛即朝鮮國三錢九分九厘九毛

發送於日本國之稅額規則已為揭載於第四十六條

일본을 경유하여 외국에 발송하는 우편 요금표

(일본도 연합국에 속하지만 이미 해당 요금을 별도 게재했으므로 여기에는 넣지 않았음)

| 국가명 | | | 선로 | 서신 매 15그램 | 등기 요금 | 인쇄물 매 50그램 | 상품건본 | | | 상업용 서류 | | | | | | |
|------------------------|---|--|---------------|--------------------|----------|---------------|-----------|------------|-------------|-----------|------------|------------|------------|------------|-------------|---|
| | | | | | | | 50g 까지 | 100g 까지 | 이상 매 50g | 50g 까지 | 100g 까지 | 150g 까지 | 200g 까지 | 250g 까지 | 이상 매 10g | |
| 만국우편 연합조약 국가명 | 독일 아르헨티나공화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이집트, 스페인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그리스, 이태리 | 룩셈부르크 멕시코 | 미국 경우 | 일본 동화(郵貨) | 同 | 同 | 同 | 同 | 同 | 同 | 同 | 同 | 同 | 同 | 同 | |
| | | | | 錢 | 錢 | 錢 | 錢 | 錢 | 錢 | 錢 | 錢 | 錢 | 錢 | 錢 | | |
| | | 몬테네그로 | 홍콩 경우 | 10 | 10 | 3 | 4 | 6 | 3 | 7 | 9 | 11 | 13 | 15 | 3 | |
| | |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로루시, 페르시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엘살바도르, 스웨덴 스위스, 터키 | (무린지시 비경유) | 10 | 10 | 2 | 3 | 4 | 2 | 6 | 7 | 8 | 9 | 10 | 2 | |
| 상기 연합국과 동일 요금 | 샤먼(廈門) 광둥(廣東) 베트남(安南) 푸저우(福州) 타이완(臺灣) | 하이핑(海豐) 산도(仙頭) 한장(漢江) 닝보(寧波) | 홍콩 경우 | 홍콩 및 무린지시 경유 | 12 | 10 | 3 | 4 | 6 | 3 | 7 | 9 | 11 | 13 | 15 | 3 |
| | | | | 홍콩, 상하이, 블라디보스톡 | 직항 | 5 | 10 | 1 | 2 | 2 | 1 | 5 | 5 | 5 | 5 | 5 |

부주(附注)

연합국과 동일 요금으로 샤먼, 광둥 등지에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등기로 하더라도 등기 확인은 홍콩 우편국 출장소까지만 가능함.

중량 1그램은 일본 단위로 2분(分) 66모(毛)임. 15그램은 일본 단위로 3총(匁) 9분(分) 9리(厘) 3모(毛)이며 조선 단위로 3전(錢) 9분(分) 9(厘) 9모(毛)임.

일본으로 발송하는 요금 규정은 제46조에 게재되어 있음.